



퇴직연금의 이해 2: 퇴직연금제도의 유형

오병국 연구원

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(DB: Defined Benefit), 확정기여형(DC: Defined Contribution)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.

-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경우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취하고 있음.
- 또한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2012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.

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.

-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 받을 급여의 수준을 약정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함.
 - 사업자의 비용은 약정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부담금임.
 - 사업주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야할 책임이 있음.
-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납부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음.
 - 반면,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.
- 근로자의 퇴직 시 특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.
-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보장장치의 한계로 인해 퇴직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퇴직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음.

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사업주가 급여의 일정비율 또는 급여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등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의 합계금액에 의해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결정됨.

- 사업주는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을 가진.
-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급여는 자산운용성과, 퇴직연령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.
- 적립금이 급여를 반영하여 계산되어 있고, 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근로자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므로 퇴직급여 확보의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임.
 - 예를 들면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퇴직시점에서 기업의 경영악화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에 의해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에 퇴직금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연금자산관리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.

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제도(IRA)¹⁾를 개편한 것이며,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제도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.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가입으로 인해 정해진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.
-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,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.

〈표 1〉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

구분	확정급여형	확정기여형	개인형 퇴직연금제도
사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납부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직급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연금자산의 운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 제도의 설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
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확정된 수급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음 • 지급보장제도의 한계로 기업 파산 시 수급금액이 예기치 않게 감소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의 수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•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수급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 •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 본인의 추가기여가 가능함

1)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근로자의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. 또한,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·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좌로 정의될 수 있음.